

수원지방법원 2024. 11. 15 선고 2024가단50836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, 유병연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예진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8. 23.

판 결 선 고 2024. 11. 15.

주 문

1. 피고와 C(D생) 사이에 경남 합천군 E 대 106㎡ 중 2/11 지분에 관하여 2019. 7. 18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경남 합천군 E 대 106㎡ 중 2/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당사자들의 관계

F은 G와 혼인하여 그 자녀로 피고와 C, H, I을 두었다.

나. 원고의 C에 대한 채권

- 1) J 주식회사(이하 ‘J’라고 한다)는 2017. 11. 21. C에게 3,000만 원을 계약만료일 2022. 5. 27., 약정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27.9%로 정하여 대여하였다.
- 2) C이 J에게 위 대여원리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, J는 2018. 10. 26.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C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다.
- 3)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637996호로 C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. 4. 23. 법원으로부터 “C은 원고에게 41,942,999원과 그 중 3,000만 원에 대하여 2019. 4. 1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.9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”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[이하 ‘이 사건 채권(채무)’, ‘이 사건 확정판결’이라고 한다.].

다. 피고와 C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

- 1) F은 2002. 9. 4. 상속재산으로 경남 합천군 E 대 106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고 한다)을 남긴 채 사망하였고, F의 상속인인 G, 피고, C, H, I은 2019. 7. 18.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단독 상속한다는 취지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고, 당일 그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[이하 ‘이 사건 분할협의(서)’라고 한다.].
- 2)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해 ‘2002. 9. 4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’을

원인으로 하여 2019. 7. 18.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라.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의 재산 상태

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유일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토지의 상속지분인 2/11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,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7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대법원 등기정보센터, 합천등기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, K에 대한 신용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

가. 피고의 주장

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약이 있는 날인 2002. 9. 4.(이 사건 토지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)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.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 및 그에 따른 집행문을 부여받은 무렵(2020. 5. 15.경)에는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취소원인을 알았다 할 것인데,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.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.

나. 관련 법리

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,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(민법 제406조 제2항). 이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하되, 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(대법원 2002. 7. 26. 선고 2001다73138, 73145 판결, 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7다28819, 28826 판결, 대법원 2021. 6. 10. 선고 2020다265808 판결 등 참조). 한편 ‘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’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,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. 이때

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,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(대법원 2018. 7. 20. 선고 2018다222747 판결 등 참조).
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,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(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7다63102 판결, 대법원 2018. 4. 10.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).

다. 판단

피고와 C 등이 2019. 7. 18.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단독 상속한다는 취지로 상속재산
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처분문서인 이 사건 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
당일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, 이 사건
토지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가 2002. 9. 4.로 기재된 것은 상속재산분할협약에 의해
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등기원인일을 '피상속인이 사망한 날'로 기재하도록 한 등기예규를 따른
것으로 보일 뿐이며,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2002. 9. 4.경 이 사건 분할협약이 있었다고 볼 만한
아무런 증거가 없다(원고의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분할협의서 작성일자인 위 2019. 7. 18.로부터 5년
이내에 제기되었음은 명백하다.).

나아가 을 제1, 2호증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피고가 지적하는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, 원고가
피고의 주장과 같은 시점에 C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사해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
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.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
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.

3. 본안에 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원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부터 C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것과
같으므로,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앞서 본 것과 같이 C이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포기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고,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재산이 감소되었다.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C은 이 사건 분할협의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 재산이 감소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(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7다29119 판결, 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).

다.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

결국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2/1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으므로(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),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(원물반환)으로 C에게 위 토지 중 2/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.

판사 이희승